
한국어 교육의 변화와 한국어 교원의 미래

김중섭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장,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한국어 교육계의 변화 양상을 몇 가지 차원에서 점검하고, 한국어 교원의 미래를 예상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변화 양상, 한국어 학습자의 변화 양상, 한국어능력시험의 중요성, 한국어 교육계의 내실화 및 세종학당의 등장 등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교육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교원의 현재 위상과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를 검토하여 한국어 교원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위한 제언을 보이하고자 한다.

2. 한국어 교육의 변화

2.1.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변화 양상

한국어 교육의 변화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한국어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이 어떤 역사와 변화

양상을 거쳐 왔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가 대학의 부설 교육 기관을 통해 교육되기 시작한 것은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의 설립에서부터이다. 1959년 문을 연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은 외국 선교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지만, 그동안 개인적 차원에서 알아알음 학습해 오던 한국어를 대학이라는 교육 기관에서 가르침으로써 한국어 교육이 공공의 교육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경제 수준은 개발 도상국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상태였고, 국가적 위상도 세계의 주목을 받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한국어 교육을 둘러싼 국가적 환경과 제반 여건이 한국어 교육 현장의 학생 수, 교사 수, 교육 내용의 수준, 교육 과정의 설계 등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현실은 암울한 상태였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서서히 국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정립되면서부터였다. 1975년 한일 수교를 시작으로 1984년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아시아 지역 사회에서 한국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무난히 개최해 났으로써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국제 사회에 급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었고, 2011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 회담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한국이 외교력과 경제력을 갖춘 국제 무대의 주요 구성원으로 성장하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한국어 교육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발전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

1992년의 한중 수교는 한국어 교육이 제대로 오를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었다. 당시만 해도 미국과 일본에 국한되어 있던 한국어 학습자가 중국과 공산권 국가로 확대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을 둘러싼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많은 대학들이 한국어 교육 기관을

연달아 설립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되었다. 연세대학교가 1959년 한국어 교육 기관을 설립한 이래, 서울대학교가 1969년에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한국어 교육의 초기 역사를 이끌어 왔다면, 드디어 한국어 교육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된 1980~1990년대에는 여러 대학이 한국어 교육 기관 및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고려대학교가 1986년에, 이화여자대학교가 1988년에, 서강대학교가 1990년에, 경희대학교가 1993년에, 한양대학교가 1997년에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전성기를 마련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였다. 이후 한국어 교육 기관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4월에 발족한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의 회원교가 2011년 7월 현재 139개인 것으로 볼 때,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은 가히 폭발적으로 그 수가 늘었다고 할 수 있다.

2.2. 한국어 학습자의 변화 양상

한국어 교육이 걸음마를 댔던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한국어 학습자는 대부분 외국의 선교사들이거나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들이었고 주로 영어권 학습자들이었다.

이후 1970년대 초부터 일본인 학습자와 재일 동포가 한국어 교육의 주요 학습자군을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1975년 한일 수교 이후 그 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영어권 학습자와 달리 일본어권 학습자들은 다소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영어권 학습자와는 다른 강의 방식과 교육 방안이 필요하였다. 어찌 보면, 학습자군이 다양해진 것이 한국어 교육계에 교수법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지 모른다. 1980년대 이전까지 주로 청각 구두식 교수법에 따라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수 방식을 따르던 한국어 교육계는 1980년대 중반에 받아들인 서양의 의사소

통 교수법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표현 능력을 강조하는 교수법으로 일대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어 교육계는 학습자군의 다양화로 인해 교수법의 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었다.

한국어 학습자의 양적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국내에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국내 대학들이 국제화의 교류 수단으로, 혹은 수입의 한 방편으로 외국인 학습자 유치에 전면적으로 나서게 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들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 과정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단기 한국어 연수 과정과 달리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은 유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들이 대학 교육을 잘 이수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한국어 실력을 갖추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 러시아, 동남아 지역에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그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력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춰 각 기업에서는 현지인을 채용하여 국내 대학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한국어 연수를 진행하는 추세이다. 기업이 선발한 인재를 기업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 과정도 새로운 교육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결혼 이주 여성의 증가는 한국어 교육의 지평을 어디까지 넓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 주었다. 이들은 외국에서 바로 유입된 외국인 학습자와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도 필요하다. 다문

화 가정의 외국인 여성과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누가 어떻게 담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여러 단체의 교육적·재정적 지원도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녀들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공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을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선생님이 맡아야 할 것인지, 국어 교육을 전공한 선생님이 맡아야 할 것인지도 결정하기 쉽지 않다.

2.3.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중요성 대두

한국어 교육 환경의 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시험이다.¹⁾²⁾

〈표 1〉 연도별·회차별 일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수

연도	회차	응시자 수(명)
1997	제1회	2,274
1998	제2회	2,663
1999	제3회	3,445
2000	제4회	4,850

1) 1997년에 제1회 시험을 실시한 이래, 2011년 8월 현재 제23회 시험(2011년 7월 17일 실시)을 실시하였다. 1997년과 1998년에 실시된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였고, 제3회 시험부터 제20회 시험까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21회 시험부터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2) 2010년 기준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한 국가를 보면 ‘한국, 일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미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러시아, 호주, 독일, 브라질, 베트남, 태국, 캐나다, 영국,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프랑스, 미얀마, 인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터키, 라오스, 파키스탄, 체코, 이집트, 벨라루스, 이탈리아,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스페인’ 등이다.

연도	회차	응시자 수(명)	
2001	제5회	6,049	
2002	제6회	7,306	
2003	제7회	10,416	
2004	제8회	15,279	
2005	제9회	23,401	
2006	제10회	30,270	
2007	제11회	12,030	43,813
	제12회	31,783	
2008	제13회	26,864	63,460
	제14회	36,596	
2009	제15회	34,598	75,141
	제16회	40,543	
2010	제17회	3,211	92,722
	제18회	36,183	
	제19회	41,533	
	제20회	11,795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에 제1회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응시자 수는 2,274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의 통계를 보면 92,722명이 응시하여 실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 준다. 한국어능력 시험의 응시자 수와 시행 국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응시자가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응시자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어 학습 열기가 고조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수 기법과 평가 문항 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어능력시험이 한국어 교육 현장에 영향을 준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입학 기준이었

다. 과거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성장에 치중하여 조건부 입학 등의 제도를 통해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대학으로 유입되었다. 이는 많은 문제를 낳았고 이를 인식한 각 대학 당국의 목소리를 수용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외국인 대학 입학 조건을 강화하여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제도화하였다. 실제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를 대학에 진학시키고, 진학 후에는 특별한 관리 없이 학습자 개인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겨 두기만 했던 대학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지침이 시행된 이후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교육 과정 개발과 교육 내용 발굴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한국어 교사 역시 학습자의 3급 자격 획득을 위해 교육 자료 개발과 교수 방안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더불어 외국인 학습자들 역시 엄격해진 대학 입학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학습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2.4. 한국어 교육계의 내실화 및 세종학당의 등장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 환경의 변화에서 주목할 것은, 한국어 교육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자발적인 협의체의 구성과 국가적 차원의 한국어 보급 추진 사업을 들 수 있다.

한국어 교육 기관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2000년 이후, 한국어 교육계에서는 교육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 관리 방안을 공유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학회 차원에서의 논의도 있어 왔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학문적 차원, 혹은 교실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수업 방안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으므로 관리, 행정, 정책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위해서는 새로운 협의체가 필요했다. 2006년 4월 한국어 교육 기관의 기관장들이 중심이 된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가 발족하

게 되었다. 이 협의회는 2011년 7월 현재 국내 139개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이 회원교로 참여하며³⁾ 매년 2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국어 교육 기관이 처한 현안을 논의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효율적인 유학생 관리 방안’, ‘한국어 교사의 처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여러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는데, 주목할 것은 한국어 교육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 주요 부서와의 연계를 통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박물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비자, 한국어 정책, 한국어 교육 기관 평가 제도 도입, 문화 교육의 현장성 문제 등을 심도 있게 토론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기관에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39개의 회원교가 참여하는 큰 조직으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회원교 간의 적극적인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기관의 운영과 관리 방안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계의 당면 현안이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 풀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었다. 이 협의회가 더욱 내실을 기하여 한국어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교원들과 행정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 환경의 변화에서 주목할 것은 국립국어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세종학당 사업이다. 2007년 3월 최초 개원한 세종학당은 국외에서의 대중적인 한국어 교육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적인 한국어 교육 브랜드 육성이라는 강력한 비전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전 세계에 500개의 세종학당을 설립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 이 사

3) 세종학당 홈페이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이 202개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대학의 교육 기관 이외의 기관도 포함된 숫자로서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회원 기관 숫자와는 차이가 있다.

업이 당초의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된다면 국외에서의 한국어 보급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은 물론이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의 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함으로써 국내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국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국외의 교육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국내의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육자들과 국외의 한국어 교육 기관과 교육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적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어 교원의 위상과 미래

3.1. 한국어 교원의 현재 위상

한국어 교육의 초창기 시절, 한국어 교원은 현재와 같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전공자가 아니었다. 오직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정 하나로 교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재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시 교원들의 최상의 모습이었다. 더군다나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은 그렇게 인기 있는 것도 아니었다.

1980년대부터 한국어 교육 기관들이 하나둘씩 세워지면서 한국어 교원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교사를 공개적으로 선발하기 시작하였고, 자체적인 교사 연수 과정을 거쳐 기관의 교육 모형과 교안에 따른 일관된 한국어 교수를 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 기관이 수적

증가를 가져 오게 되면서 한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대학, 대학원, 대학 부설 단기 양성 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한국어 교원의 자격에 대한 법률적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후 이에 준하여 한국어 교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 2005년 당시 대학 학부 과정이 9개, 대학원(교육대학원 포함) 과정이 14개, 대학 부설 단기 양성 기관이 28개 정도였는데, 2010년 12월 현재 대학 학부 과정 30개, 대학원(교육대학원 포함) 과정이 63개, 대학 부설 단기 양성 기관은 102개로 급증하였다.⁴⁾

불과 5년 사이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수가 과정에 따라 적게는 3배, 많게는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한국어 교육의 저변이 넓어진 것을 반영함과 동시에 한국어 교원의 자격이 법적으로 규정됨으로써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팽창 뒤에는 항상 그늘이 있기 마련이다. 국내외의 경제 여건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2〉 외국인 유학생 증가 추이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학생 수(명)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7,480
증가율	-	33.8%	44.5%	51.3%	29.8%	18.6%	15.3%

4)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와 국립국어원이 공동 주최한 2011년 한국어 교원 공동 연수회(1차) 자료집에서 가져온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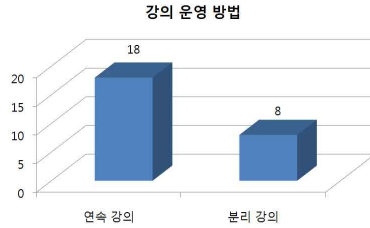
2007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던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이 2007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의 한국어 교육 기관이 가르칠 수 있는 외국인 학습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어 교원에 대한 기관의 채용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기관들이 대학원(교육대학원 포함)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과정을 운영하여 매학기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지만, 그들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이 운영하는 자체적인 단기 양성 과정에서도 많은 수료생들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해당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예비 교원의 공급은 점점 확대되는 데 비해, 그들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현실이다. 따라서 예비 한국어 교원들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방면으로 모색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기관의 한국어 교원이 된다고 해도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한국어 교원의 처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조사가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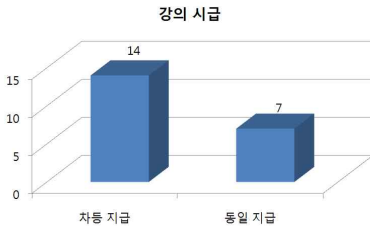
이 조사는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었으며, 139개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의뢰하였으나 26개 대학 기관만이 설문문에 응하였다. 설문 분석에 응한 대학은 각주 5)의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어 교원들이 전일제로 기관에서 강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강의 운영 방법’을, 한국어 교원의 보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강의 시급’을, 한국어 교원이 어느 정도의 강의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강의 시수’를, 최소한의 신분 보장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 여부’, ‘계약 조건’, ‘퇴직금 지급 여부’를 설문하였다.

5)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2011년 여름 워크숍의 발표 자료집에서 가져온 자료임.

- 1) 강의 운영 방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속 강의를 하는 곳이 18개 기관, 월·수·화·목 분리 강의를 하는 곳이 8개 기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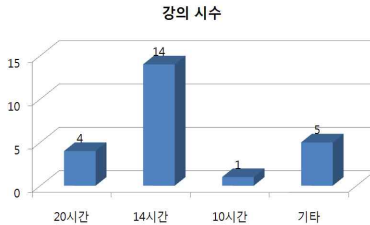


- 2) 강의 시급: 신입 교원과 경력 교원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곳이 14개 기관이었는데, 신입 교원은 시간당 20,000원부터 30,000원까지, 경력 교원은 22,000원부터 38,000원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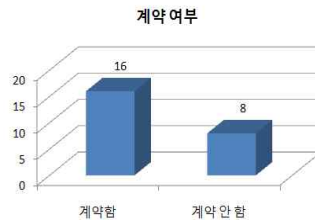


었다. 신입 교원과 경력 교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곳이 7개 기관이었는데, 25,000원부터 43,000원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그 외의 기관은 학력, 재직 연도 등에 의해 자체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은 답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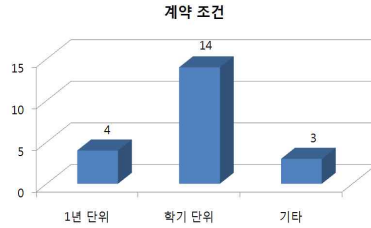
- 3) 강의 시수: 강의 시수를 20시간으로 하는 기관은 4곳이었으며, 14시간이라고 답한 기관이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10시간은 1곳이며, 기타 자체 기준에 따라 시간을 정한다는 곳이 5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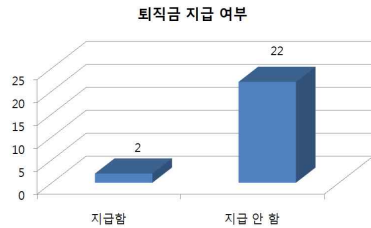
- 4) 계약 여부: 계약을 한다는 기관이 16곳,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곳이 8곳이었으며, 2개 기관은 답하지 않았다.



5) 계약 조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곳이 4곳, 학기 단위로 계약하는 곳이 14곳이었으며, 명확하게 답하지 않은 곳이 3개 기관이었다.



6)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을 지급하는 곳이 2곳에 불과하였고, 지급하지 않는다는 곳이 22곳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개 기관은 답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한국어 교원 신분의 안정성 여부이다. 한국어 교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강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수, 신분에 대한 보장이 필수적인데 계약 여부와 조건, 그리고 퇴직금 지급 여부 등에서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강의 시수도 14시간 이하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강의 시급이 적은 교원의 경우 월 보수 자체가 충분치 못함을 알 수 있다.⁶⁾ 이처럼 한국어 교원에 대한 신분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한국어 교육 기관이 안고 있는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 기관은 대학의 부설 교육 기관으로서 대학 학부나 대학원의 시간 강사와는 신분이 다르다. 그리고 엄밀히 그들에 대한 신분 보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기관

6) 조사 결과의 수치에 따라 계산해 보면, 한국어 교원으로서 가장 적은 보수를 받는 경우는 한 달에 640,000원(주당 8시간×4주×20,000원)에 계약 기간 10주(4쿼터 운영 시)에 퇴직금이 없는 경우이고,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경우는 한 달에 3,040,000원(주당 20시간×4주×38,000원)에 계약 기간 1년, 퇴직금이 있는 경우이다.

의 사정에 따라 대우가 천차만별이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한국어 교원들이 안정적인 신분 보장을 받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도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어 교원 단기 양성 과정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2005년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시행 이후 대학, 공공 기관, 민간 기관, 학원 등 수많은 기관에서 단기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월 현재 130개 기관이 단기 양성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06년의 34개 기관에 비하면 282% 증가한 것이다.⁷⁾ 단기 양성 과정의 경우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설립과 운영에 제한이 없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2010년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단기 양성 기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나, 이는 안내서 정도의 역할을 할 뿐 실제적인 관리·감독·평가 등에 관한 권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이 별로 없는 기관에서도 단기 양성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내용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단기 양성 과정에 대한 평가와 인증안이 논의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평가 지표를 기본 요건, 운영 여건, 학습 과목 등으로 세분화하여 단기 양성 기관 인증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2년에 홍보·세부 지표 개발·기관 실사 등을 추진하여 2013년에는 단기 양성 기관의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3.2.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양상

한국어 교원에 대한 최초의 명문화는 '국어기본법' 제19조 제2항에서

7)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2011년 여름 워크숍의 발표 자료집에서 가져온 자료임.

볼 수 있다. 한국어를 내국인이 아니라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자를 이른바 ‘한국어 교원’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한국어 교원에 대한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부여받는다. ‘교사’라 칭하지 않고 ‘교원’이라고 한 것은 초·중등학교의 교사 자격증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여하는 데 비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여하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다.

한국어 교원 자격은 1급·2급·3급으로 나뉘는데, 바로 1급을 받을 수는 없으며, 2급이나 3급 자격부터 받아야 한다.

한국어 교원 자격 3급 취득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먼저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다섯 가지 영역별(한국어학,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 문화, 한국어 교육 실습)로 최소 학점을 이수하고 총 21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다섯 가지 영역의 필수 이수 과목을 이수하고 이수 시간이 120시간이 넘는 자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이다.

한국어 교원 자격 2급 취득은 대학과 대학원을 통한 방법과 3급에서 승급하는 방법이 있다. 2급을 바로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영역별(부전공 영역과 같음)로 이수하고, 대학에서는 총 45학점, 대학원에서는 총 18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무시험으로 자격을 얻는 것이다.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방법은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어야 한다. 3급 가운데 부전공자는 한국어 교육 경력이 3년, 양성 기관 출신자는 한국어 교육 경력이 5년이 되어야 2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2006년부터 2011년 4월 현재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자는 총 6,190명(2급 2,782명, 3급 3,408명)이며, 내국인은 5,281명이고 외국인은 369명이다.⁸⁾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한국어 교원들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현장은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 이외에도 여럿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몇몇 교육 현장을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여성가족부에서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센터는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22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초·중·고급의 능력별로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국어 강사는 주로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료사이거나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현재 모든 귀화 신청 대상자에게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 과목을 일정 기간 동안 이수하게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기관·지자체 등 247개 기관에서 1,014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 시행 중인데, 한국어 교육이 51.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는 해당 운영 기관에서 강사의 기본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한국어 교육은 ‘중앙다문화교육센터’와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운영된다. 교육 대상과 내용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2세에 대하여 방과 후 한국어 교육을 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연도별로 보면 2006년 869명(269명, 600명), 2007년 639명(185명, 454명), 2008년 842명(341명, 501명), 2009년 1,037명(613명, 424명), 2010년 2,157명(826명, 1,331명), 2011년 646명(548명, 98명)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2급과 3급의 순서이다. 1급 자격증 취득자는 아직 없는데, 이는 2급 자격증 발급 이후 경력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2011년 하반기부터 1급 자격증 취득자가 나올 예정이다. 이 자료는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2011년 여름 워크숍의 발표 자료집에서 가져온 것이다.

3.3. 한국어 교원의 미래

한국어 교원의 미래는 그들이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은 유학생 수의 증가세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맞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어 교원의 지속적인 유입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어 교원 자격을 획득한 자들이 적절한 교육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한국어 교원 또한 국외의 한국어 교육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만 보더라도 한국어 교원에 대한 파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여 개의 종합 대학에서 전문적인 한국어 교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대학에 전공은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처우가 좋은 비상근 전임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원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인 한국어 교원의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남미와 유럽 등 서양어권에서도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국외 한국어 교원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파견 요구에 있어 국내외의 여러 한국어 교육 현장의 한국어 강사들에 대한 분명한 자격 조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외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문 교사를 시급히 양성할 필요가 있다.

국외의 해외문화원, 한국종합교육원, 한국학교 등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춘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지의 교육 현장에 적합한 현지 특화 교육을 이수한 한국어 교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립국어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학당의

교원들도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한 교원 중에서 우수 인력을 선발하여 파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어 교원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학습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등 예비 전문가로서의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한편,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법무부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한국어 방문지도사 등의 프로그램에도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한국어 교육 전문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원을 파견하게 된다면, 한국어 교원의 진로와 미래는 지금보다는 분명 긍정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의 주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해당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한국어 교원의 자격과 전문성을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어 교원의 전문화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수적 팽창에 관심을 두었던 이전과는 달리 외국인 유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성장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원 중에서도 그들을 위한 전문 상담 교원이 필요할 수 있다. 진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진로 상담 교원, 학생들의 생활과 대인 관계 등 사회 적응과 관련한 문제들을 상담해 주는 심리 상담 교원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전문 교원들을 효율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각 기관 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기관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전문 상담 교원을 각 교육 기관에서 일정 인원 선발하는 방침을 세울 수만 있다면, 한국어 교원이 향후 나아갈 다양한 진로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어 교원들이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교육할 수 있는 기회와 터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3.1.절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 기관에 소속된 한국어 교원에 대한 신분 보장 및 대우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어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 교원은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부모이고 친구이고 가족 같은 존재이다. 그들의 학습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교우 관계 및 건강 문제까지 관심을 두어야 하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대학의 시간 강사와는 매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교안 작성 및 교수법 워크숍, 교재 개발 등의 교육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보통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원에 대한 신분 보장 및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시간당 강사료와 일정 업무에 따른 약간의 수당 이외에 한국어 교원이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에 한국어 교육계에서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공동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 기관의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한국어 교원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국립국어원과 같은 공공 기관에서 준비할 수도 있고,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와 같은 협의체에서 준비할 수도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한국어 교원의 신분 보장 및 처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기관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 기관들에게 소개하고, 이에 준하는, 하지만 각 기관의 실정에서 다소 변용이 가능한 표준적인 방안을 준비하여 시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어 교원에 대한 신분 보장 및 처우 방안을 적절하게 마련한 기관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한국어 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한 근거로 삼을 필요도 있다.⁹⁾ 제도적으로 한국어 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가 준비되어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논

의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대우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의체 등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맺는말

한국어 교육은 지난 50년간 많은 변화와 역동의 역사를 거쳐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동안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민간 차원의 한국어 교육이 국내외에 다양한 여건이 마련됨으로 인해 공공의 차원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원의 미래도 그 영역이 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교원의 현실이 미래를 낙관할 정도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시행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분과 처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한국어 교원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관 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계 내부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세계화 시대인 만큼 한국어 교원도 국내의 한국어 교육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국외의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국내의 한국어 교육은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내실이 튼튼해지고 학문적으로 자리매김을 해 왔지만 이에 비해 국외의 한국어 교육은 아직 이뤄 내야 할 것이 많다.

좀 더 시야를 넓혀 국외의 한국어 교육을 바라본다면 현지의 다양한

-
- 9)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 교육 기관이 아닌 대학에 대한 평가이긴 하지만,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유학생 관리 우수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은 분명히 재정적, 정책적 지원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춘 교수법의 개발과 연구 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분야들이 무궁무진하다. 국외 한국어 교육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여 전문적인 한국어 교원의 파견을 원하고 있고, 연구할 영역 또한 풍부하다.

이처럼 한국어 교원의 미래는 장밋빛이며 충분히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09), 《〈세종학당〉 평가 사업 보고서》, 국립국어원.
- 국제한국어교육학회(2009), 《한국어 교사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 국제한국어교육학회(2010),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공청회 자료집》.
-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2009), 《2009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 발표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2010), 《2010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 발표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 백봉자(2009), 한국어로 세계를 열다, 《한국어학당 창립 50주년 기념 제5회 한국어 교육 학술 대회 자료집》, 3~19.
- 조항록(2008), 21세기 한국어 교육 환경의 변화와 세종학당 설립의 의의와 과제, 《세종학당 논총》, 105~128.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한국어능력시험 15년사》.
-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2011), 《한국어 교원 공동 연수회 발표 자료집》.
-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2011), 《한국어 교육 기관의 우수성 제고를 위한 방안》.